

형사법 문제

문제]

은행원 A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강도 전과가 있는 친구 K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을 털기로 모의하였다. 은행은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지상 20층 지하 5층으로 구성된 대형 빌딩인 태산 빌딩 내에 있었다. K는 절도계획을 K의 친구인 H와 G에게도 알려주어 같이 은행의 금고만을 털기로 하였다. H는 절도 당일에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고 다른 은행직원들 모르게 A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남아있기로 하였다. H는 절도 계획의 진행 중 상황의 이상이 있으면 K와 G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기로 하였다.

은행원 A는 자신이 숙직하는 날 밤에 K가 건물 측면을 통해서 은행의 금고가 있는 곳으로 건물 벽을 대형 드릴 등 공구로 뚫고 들어오면 K 및 H, G와 같이 은행을 털기로 하였다. K는 절도를 위하여 자신의 친구 E의 자동차를 E의 허락 없이 몰래 은행까지 몰고 왔다.

H는 자신들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게 절도모의를 알리기로 결심하였다. H는 은행에 들어가서 업무종료까지 숨어있다가 K와 G가 은행의 금고 있는 곳으로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은행절도를 신고하였다. A는 은행에서 숙직하던 중 갑작스럽게 은행이 입주해 있는 태산 빌딩 건물의 경비원 W의 방문을 받았다. 금고에 도착한 K에게 가려던 A는 H와 함께 있던 장면이 경비원 W에게 목격되자 여러 말로 둘러대려고 하였고, 경비원 W는 은행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눈감아 주기로 하였다.

공범인 K는 공범들인 A, G, H와 금고를 열고 금고에 있던 현금 3억원 2천만원 정도를 가방 네 개에 나누어서 다 넣었고, 은행을 벗어나기로 하였다. A, G, H, K는 발각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자 현금 8천만 원씩 나눈 가방

한개씩을 들고 각각 흩어져서 건물에 있던 1층 통로와 지하 1층, 2층, 3층 통로를 통해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탈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A는 은행이 입주한 건물을 약속과 달리 지하 3층으로 빠져나가다가 범행 중 있었던 건물 경비원 W에게 사후에 돈을 따로 건네기로 한 사실을 휴대폰 메시지로 공범인 K에게 전달하면서 경비원 W의 뒤통은 A 자신의 뒤통에서 떼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1층으로 빠져나가던 공범 K는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1층에 위치한 건물 숙직실로 달려가 경비실에 앉아있던 W의 뒷머리를 해머로 가격하였다. W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물 지하 3층으로 나가던 공범 G는 건물과 연결된 상가가 연결된 지하도를 통해서 은행을 벗어난지 10분 후에 지상으로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주위에서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로부터 500미터 정도를 도보로 달려서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지원요청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차단되어 도주가 힘들어지자 가지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서 경찰관 중 1명에게 허벅지에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 G는 그 이후 바로 체포되었다.

은행을 벗어나서 도주 중이던 A는 은행 입주 건물 1층으로부터 50미터 떨어진 곳인 자신의 자동차가 있던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H는 받은 현금을 가지고 이미 연락한 경찰관에게 그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K는 은행을 완전히 벗어나서 도주하였는데, 서울이 아닌 대전에 도피 중이다가 불심검문으로 체포 상황에 처했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 흉기로 임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팔과 다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지만 체포되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된 경비원 W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A, G H, K, W의 형사책임(공범관계, 미수범 여부, 각자의 죄책과 공소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을 설명하시오. (반드시 각자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을 합당한 법적 논거를 통해서 설명할 것)